

▣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▣

현 행	개 정 안	사유
<p>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	<p>제2조(기능)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. <u>개방이사</u>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<u>② 본조 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학칙이란 대학의 학교규칙을 의미한다.</u></p>	<p>개정사유 규정문구의 분명화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제4조(자격)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평의원은 웅지세무대학 전임교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2. 직원 평의원은 웅지세무대학 정규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3.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	<p>제4조(자격)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평의원은 웅지세무대학 전임교원으로서 <u>근속기간</u> 1년 이상 재직한 자 2. 직원 평의원은 웅지세무대학 정규직원으로서 <u>근속기간</u> 1년 이상 재직한 자 3.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4. <u>동문 평의원은 본교졸업생이면서 평의원으로서 연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</u> 	<p>자격의 분명화 근속기간의 분명화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
-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③ 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1. 휴직 및 퇴직
 2.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
 3.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- 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1. 휴학 및 졸업
 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 3.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

5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평의원으로서 연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

-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③ 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1. 휴직 및 퇴직
 2.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
 3.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- 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1. 휴학 및 졸업
 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 3.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
- ⑤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의 근속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1. 직원평의원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채용 이후 정규직원이 되기 직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
 2. 교원평의원인 경우 최근 2년 내에 휴직한 경우 최근 2년 내에 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로 한다.

	<p><u>3. 교원평의원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전임교수 외 재직(겸임, 초빙, 특임, 명예)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</u></p>	
<p>제5조(추천 및 위촉)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교수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 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 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 4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	<p>제5조(추천 및 위촉)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<u>대학의 장</u>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<u>대학의 위임을 받아 교무(학)처장이 소집한</u> 전체교수회에서 <u>선출한 후 교무(학)처장에게</u> 추천받아 위촉한다. 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<u>사무처장이 소집한 전체</u> 직원회에서 <u>선출한 후 사무처장에게</u> 추천받아 위촉한다. 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<u>선출한 후 총학생회장에게</u> 추천받아 위촉한다. 4.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<u>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 다만, 동문의원 추천시점에서 총동문회가 없을 경우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.</u> 5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<u>외부인사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.</u> <p><u>② 본조 제1항의 제1호, 제2호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하는 구성단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정년이 경과한 인원은 회의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전체회의 소집권자를 명문화 타대학 규정을 참고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 <p>제2항의 개정은 직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확정여부를 결정한다.</p>
<p>제6조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을 둔다. 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</p>	<p>제6조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 <u>및 부의장 각</u> 1인을 둔다. 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<u>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며</u>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</p>	<p>회의 소집권 및 소집권자 유고시의 상황을 규정화</p>

<p>유고시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를 대리한다.</p>	<p>③ 의장은 평의회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이 <u>개인사정등으로 유고시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을 새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의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<u>회의의 소집은 부의장이 하고, 부의장도 유고시엔 최연장자가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호선한다.</u></p>	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<없음></p>	<p>제6조2(평의회 간사) ① <u>평의원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간사는 평의회 의장이 대학의 장에게 요청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<u>간사는 의장과 협의하여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자료 준비 등의 대학평의원의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.</u></p>	<p>간사규정 삽입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제7조(평의원의 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(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)으로 하되,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된다. 다만,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한다. 다만,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.</p>	<p>제7조(평의원의 임기 등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(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)으로 하되,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<u>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연</u>해촉된다. 다만,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<u>전임자가 자격상실한 날부터의</u>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의 <u>2주 전까지</u> 후임 평의원을 선출<u>해야 한다.</u>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<u>위촉</u>한다. <u>다만, 재적의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의원을 위촉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<u>대학의 장은 본조 제2항에 따라 평의원을 새로 위촉할</u></p>	<p>타대학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
	<p>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임기만으로 새로운 평의원을 위촉해야 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에 요청해야 한다.</p> <p>2.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평의원을 위촉해야 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단위에 요청해야 한다.</p>	
<p><없음></p>	<p>제7조2(학생의원에 대한 특례) ① 학생의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, 임기만료 후 추천하는 구성단위의 재추천을 받아 학생의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의원을 제5조에서 정하는 추천 구성단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추천하는 구성단위로 본다.</p> <p>1. 각 학년대표로 각 2인으로 구성된 학생단체</p> <p>2. 각 학부(과)대표로 각 3인으로 구성된 학생단체</p> <p>3. 학생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</p> <p>③ 본조2항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구성단위도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해당 구성단위와 대학내 학생관할부서가 협의하여 후보자를 정한 후 온라인, 오프라인 투표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학생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. 이 때 대학의 장은 해당선출자를 학생의원으로 위촉한다.</p> <p>④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한다.</p>	<p>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모든 의결이 지체된 적이 있어 그럴 경우를 방지하고자 규정삼입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 <p>제5항 통과 찬 6 반 3</p>

	<p>1.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의원추천 구성단위에 속한 자</p> <p>2.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대의원회에 속한 자</p> <p>3.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</p> <p>④ 본조의 제2항과 제3항은 제5조에서 정하는 구성단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만 임시로 적용하며, 제2항, 제3항을 통해 위촉된 학생의원의 임기는 해당 구성단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학생의원을 추천하여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.</p> <p>⑤ 본 조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구성단위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학생의원의 동의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.</p>	
<p>제8조(회의)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</p> <p>③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다만,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</p>	<p>제8조(회의)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평의원회는 재적 <u>의원</u>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</p> <p>③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<u>의원 과반수</u>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다만,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</p> <p>④ <u>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, 부의장도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중 최연장자가 본조에서 정한 의장의 역할을 대리한다.</u></p> <p>⑤ <u>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일 경우에 한해 대학의 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</u></p>	<p>의결 정족수 완화로 평의원회 의결 권한 강화 및 식물화 방지</p> <p>타대학 평의원 규정 참조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제8조의2(실비지급)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일에</p>	<p>제8조의2(실비지급) 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일에</p>	<p>회의비 지급조건</p>

<p>대하여 외부의원은 일십만원, 내부의원은 삼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.</p>	<p>대하여 <u>교외의원은(동문 및 대학발전의 도움이 될수 있는 자)</u> 일십만원, <u>교내의원(교원, 직원, 학생)</u>은 삼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.</p> <p><u>② 성원이 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	<p>분명화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제9조(회의록 작성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회의록 작성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<u>대학의 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의록에는 출석<u>의원</u>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교외의원에 한해 의장이 대표 서명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는 대표서명을 위한 동의서를 회의록에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출석의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회의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u></p>	<p>회의록 작성의 업무상 어려움 완화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<p>제11조(비밀유지)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1조(비밀유지)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<u>②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밀사항이란 각 회의 개최마다</u></p>	<p>문구의 분명화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
	<p><u>의결하여 정하며 해당 기밀사항과 관련되어 법령에서 정함 또는 행정부 처분이 있을 경우 의결에도 불구하고 기밀로 보지 않는다.</u></p>	
<p>제12조(추천위원회 선발 및 추천) ①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3인의 위원(이하 추천위 위원)을 대학구성원(재학생, 재직교원 및 직원)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.</p> <p>② 평의원회 의원은 추천위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대학구성원은 평의원회 의원을 통해 추천위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단, 평의회 의원 1인당 2인 이내로만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③ 평의회는 추천위 위원 후보자 별로 추천여부를 무기명투표하여,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점 순으로 3명을 선발한다. 선발된 추천위 위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추천을 받아 선발하며, 재추천부터는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자 중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 득표수가 동일한 다수 후보자 중 선발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선발한다.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.</p> <p>④ 추천위 위원 후보자 추천공고는 평의원회에서 7일 이상으로 정하며, 공고문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대학구성원에게 학내 주요게시판에 후보자추천을 공지해야 한다.</p> <p>⑤ 개방이사(감사) 추천기간 중에는 추천위 위원의 성명, 이메일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추천위원회 선발 및 추천) ①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3인의 위원(이하 추천위원)을 대학구성원(재학생, 교직원 및 직원)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.</p> <p><u>② 평의원회 의원은 의원별로 2인 이내의 추천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평의원 의원의 1인 1표 방식의 표결 후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위 위원 3인이 선출된다.</u></p> <p><u>③ 득표수가 동일한 추천위 후보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발하며, 결선 투표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위원을 결정한다.</u></p>	<p>후보인별 찬부방식의 표결은 극단적으로 다수에 유리한 방식임</p> <p>1인 1표제를 통하여 소수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선출 가능성을 열어둠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
<p>제12조의2(개방이사 추천 및 선발) ① 개방이사 추천위 의장은 10일 이상의 후보자추천 기간을 정해서 개방이사(감사)의 자격요건 및 기준, 대학구성원의 추천방법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대학구성원들에게 후보자 추천기간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교내 주요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.</p> <p>② 개방이사(감사) 추천후보자는 추천위 위원이 직접 또는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추천해야 한다. 추천서 양식에는 피추천자 성명, 나이, 현직, 주요경력, 추천사유, 추천자 등 필수 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추천서로 피추천자를 추천 의뢰받은 추천위 위원은 반드시 추천위에 피추천자를 추천해야 한다.</p> <p>③ 추천위는 후보자 중 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, 제22조 및 제23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5항 등에 정한 결격사유, 본교 교직원으로 재직여부 등 법이 정한 이사자격의 부적격여부를 판정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적격인 후보자를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④ 의견 내용 중 본 법인의 전직 이사(감사)로서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력, 형사범으로 기소중인 상태 등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추천하지 아니한다. 단, 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⑤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공시기간이 끝나면 추천위는 취합한 의견서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천을 완료한다. 추천이 완료되면 추천위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대학평의회 의원과 대학구성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추천위 규정은 평의회 규정으로 둘 수 없음 (교육부 2019년 12월 법인운영지침 참조)</p> <p>논의결과 규정개정 찬성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13조(개정)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교원, 직원,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개정)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학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교원, 직원,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③ 본조의 제1항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, 관할청의 명령 등으로 인한 규정개정만 있는 경우는 본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문구의 분명화
 논의결과
 규정개정 찬성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본 규정에서 평의원의 자격, 선출, 임기등에 대한 개정(제4조,제5조,제6조,제6조의2,제7조,제8조,제8조의2,제9조)는 2020년 6월에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보궐의원 선출부터 적용한다.